보은군 공고 제2020 - 1361호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

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은군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발령 합니다.

2020년 11월 11일
보 은 군 수

1. **처분당사자** : 보은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. **처분내용** : 다음 각 호의 장소(①)에서 마스크(②)를 올바르게 착용(③)할 것

① 장소

○ (다중이용시설 등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·일반관리시설(핵심방역수칙 의무화)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 ※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

※ 중점관리시설(9종)
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㎡ 이상)

※ 일반관리시설(14종)
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○ (대중교통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비행기-여객기)

○ (집회・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

○ (의료기관・약국) 의료기관・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・이용자

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,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국

○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・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・종사자

* 입소자 및 관리・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, 의무 대상은 제외

・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
・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○ (종교시설) 종교시설(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)의 관리자(운영자)・이용자

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・행사 등 포함

○ (실내 스포츠경기장) 실내 스포츠 행사(농구・배구 등)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・이용자

○ (고위험 사업장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(운영자)・이용자

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

○ (500인 이상 모임・행사) 지자체에 신고・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・행사의 관리자(운영자)・이용자(운영자)

② 마스크 종류

○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

○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미인정

③ 마스크 착용법 관련(과태료 부과 대상)

○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○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
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 2호~4호

4. **처분사유** :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5. **처분기간** : 2020. 11. 11.(수) ~ 별도 해제 시

※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: 2020. 10. 15. ~ 2020. 11. 14.

6. **처분의 효력 발생일** : 2020. 11. 15.부터

7. **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등**

○ **과태료 부과근거**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9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○ **과태료 부과권자** : **군수**

*** 각 시설 담당부서에서 지도·점검·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**

○ **지도점검 및 단속**

- (지도·점검) 각 부서별로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·장소에 대해 지도·점검 실시
- (단속)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 이하

○ **단속내용** :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

○ **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**

-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 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 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- 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 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8. **처분서의 교부요청**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11. **과태료 부과 대상별 소관부서**

과태료 부과 장소(시설)	소관부서	
중점관리시설(9종)	유흥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㎡ 이상)	환경위생과
	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	문화관광과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경제전략과

일반관리시설(14종)	결혼식장, 장례식장	주민복지과
	목욕장업, 이·미용업	환경위생과
	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	문화관광과
	직업훈련기관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	경제전략과
	실내체육시설	스포츠산업과
	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카페	행 정 과
기타 시설	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	주민복지과
	대중교통	민 원 과
	종교시설	문화관광과
	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	경제전략과
	실내 스포츠 경기장	스포츠산업과
	의료기관·약국	보 건 소
	집회·시위장, 500인 이상 모임·행사	각 관련부서

끝.